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1-100호
2021. 12. 24.(금)

차 례

규 칙(8)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규칙 제36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규칙 제37호) 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규칙 제38호) 10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규칙 제39호) 1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규칙 제40호) 12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41호) 1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42호) 139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규칙 제43호) 146

고 시(3)

-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고시 제2021-147호) 154
-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고시 제2021-148호) 16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150호) 163

공 고(3)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1271호) 164
- 대덕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공고 제2021-1283호) 166
-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공고 제2021-1286호) · 167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
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
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
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의원면직 제한의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 신 학 력 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 문 대 학 졸 업 자	7급·8급·지도사
고 등 학 교 졸 업 자	9급

-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의 계산은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

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제3장 임용

제20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

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하여 산입하되,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를 산입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기간은 일반직공무원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하며, 재직기간 중 영 제33조제2항 또는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

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대상으로 통산하여 5할을 인정한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 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의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 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

민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의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7조(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산점은 별표 21, 별표 22, 별표 2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8조(특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5조에 따라 특정직공무원경력에 상당계급은 별표 19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과 같다.

제30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조 경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 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 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 (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 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 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 (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 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 업자

- 비 고 :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
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4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네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p> <p>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p> <p>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사 : 섬유</p> <p>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공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p> <p>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p> <p>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p>
농 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술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p>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p>
	일반선박	<p>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p>
	선박항해	<p>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p>
	선박기관	<p>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p>
	해양교통 시 설	<p>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기능사:</p>
보 건	보 건	<p>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환 경	일반환경	<p>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 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기능사:</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p> <p>기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시설 계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
 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사(2) 한의사(2)	의사(2) 한의사(2)				
		치무	치과의사(2)				
약무	약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호	간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관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관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관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건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자인	건축사(5)	건축사				
속기	속기			한글속기 1·2·3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8]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직류	연구관	연구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캐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독지연구	임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이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설비(전기분야)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야)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 · 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 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 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 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 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 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 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 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 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 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 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 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 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 경, 지적,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계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1]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담 사2급, 사회조사분석 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 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공 업	기계운전	<p>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 도교통안전관 리자
	조 선	<p>기 술 사 : 조선</p> <p>기 사 : 일반기계, 조선</p> <p>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p> <p>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p>	
	일반전기	<p>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p> <p>기 능 장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공 업	전 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p>	<p>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p>
	금 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능사 :</p>	
	자 원	<p>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p>	

농업	일반농업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p>기능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p>
	식물검역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p>	
	축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기사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p>
	생명유전	<p>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p> <p>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p>	<p>기사 자격증</p> <p>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녹지	산림자원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p>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p>	
	산림보호	<p>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p> <p>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p> <p>기능사 : 산림</p>	
	산림이용	<p>기술사 : 산림</p> <p>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p> <p>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p>	
	조경	<p>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p> <p>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p> <p>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p> <p>기능사 : 조경, 산림</p>	

해양수산	일반해양	<p>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p>	
	일반수산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p>
	어 로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해양교통 시 설	<p>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p>	
보 건	보 건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보건교육사 2급</p> <p>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p>

보 건	방 역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p>
식품위생	식품위생	<p>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p>
의료기술	의료기술	<p>기술사 방사선관리</p> <p>기사 : 의공</p> <p>산업기사 : 의공</p> <p>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p> <p>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p>
환 경	일반환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환 경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 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p> <p>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3급</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능장 : 산림</p> <p>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p>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수도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 설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도시교통 시설 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p>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자통신 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p>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p>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농촌지도 농업기계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공업연구	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전자	<p>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 전자기기</p> <p>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공업연구	금속	<p>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p>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p> <p>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p>	
	섬유	<p>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p> <p>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p> <p>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p>	
	화학	<p>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산업경영	<p>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p> <p>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p>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p>	
	물리	<p>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p> <p>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p> <p>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p>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p>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p> <p>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p>	<p>산업기사 자격증</p> <p>가산 비율 적용</p> <p>:영양사, 위생사</p>
	작물	<p>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p>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촌지도	농업	<p>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p> <p>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p>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근층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산업기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조 경	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수산자원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식품 산업기사 :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3]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5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2급 · 연구관 지도관	3급 · 연구관 지도관	4급 · 연구관 지도관	5급 · 연구관 지도관	6급 · 연구사 지도사	7급 ·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직무분야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경 감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준위 위위사	상중 사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3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관사·검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별표 9]

[별표 14]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신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5]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7]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기계운전
			일반전기
	금속		전자
			금속
	섬유		섬유
	화학공		화학공
	화학학		-
물리	-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환경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작물보호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식품검역
	농업경영	농업	농업
		농촌지도	일반농업
	산업곤충	농업	농업경영
		농촌지도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원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축산	농업	농촌생활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실	농업기계
		농촌지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	농업기계
조경		농업토목	
수의연구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료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약학	약무	치무
			약무
공중보건	보건	보건	
환경연구	환경	식품위생	식품위생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건축		농업토목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건축
	재난관리		방재안전

2. 지도직공무원

지 직	도 직	직 류	기 직	술 직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경 영	
	임 업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녹 지	전 직 류		
	임 업		녹 지 연 구	임 업	임 업 경	
			조	조		
	잠 업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충	
	원 예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24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 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9]

공무원경력직의 상당계급 기준표
(제24조제2항 관련)

구분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다급”으로 채직한 기간	“라급”으로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채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채직한 기간	“6호”로 채직한 기간	“7호”로 채직한 기간	“8호”로 채직한 기간	“9호”로 채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채직한 기간	“나급”으로 채직한 기간	“다급”으로 채직한 기간	“라급”으로 채직한 기간	“마급”으로 채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 공무원	대학교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9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도관	6 급 ·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 교 및 동부설연 구소의 교원포함)	교 수	교 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 원	16호봉 이상의 교 원	12호봉 이상의 교 원	11호봉 이하의 교 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 사 (3년이상)	이 사	부 장	과 장 (차 장)	계 장 (대리)	평사원 (3년이상)	평 사 원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7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 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 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웨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유탄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교통, 조선)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 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반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섬 업 유)	기술사(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 (자 업 원)	기술사(자원관리,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해양)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농 (축 업 산)	기술사(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 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 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 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1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영양사, 임 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 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 사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 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 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식품, 품질경 영,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 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수자원 개발,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 선관리, 광해방지, 토질 및 기초, 토 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 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 사(대기수질)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 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 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환경, 농 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 상, 식물보호, 토양환경, 자연생태 복원, 생물분류,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 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식물보호, 농업 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 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 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 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 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 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 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 통,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교통)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시 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화공)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시)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능장(산림)</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p>
보건운영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p>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생사,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섬유,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궤도장비정비, 화학분석)</p>
농 업 연 구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농 업 연 구 (산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가축인공수정사</p>
농 업 연 구 (농 공)	<p>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영양사, 위생사</p>
녹 지 연 구	<p>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해 양 수 산 연 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보 건 연 구	<p>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p>

계급 직렬	연구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광해방지)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도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가축인공수정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4.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비고 :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변경 또는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22]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제27조 관련)

1.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표

구분	영어					제2외국어 공통	
	한국외국어대 등 어학능력검정	토플 (TOEFL)	토픽 (TOEIC)	텝스 (TEPS)	플렉스 (FLEX)	스널트 (SNULT)	플렉스 (FLEX)
성적	70점 이상	PBT 567점 이상 CBT 227점 이상 IBT 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700점 이상	50점 이상	650점 이상

구분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능력시험 (JPT)	일본어 능력시험 (JLPT)	한어 수평고시 (신HSK)	델프/달프 (DELFD/DALF)	텔레 (DELE)	토르플 (TORFL)	괴테어학검정시험 (Goethe Zertifikat)
성적	640점 이상	N2 100점 이상	5급 180점 이상	DELFD B1 이상	B1 이상	기본단계 이상	GZ B1 이상

2. 가산점

구분	가산점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기준표에서 인정하는 점수	0.25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제27조 관련)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비고
1. 제안채택 및 업무개선 등	1-1 담당업무관련 중앙제안 채택 시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	
	1-2 담당업무관련 시제안 채택 시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1.5점 1.2점 0.9점 0.6점 0.3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	
	1-3 담당분야에서 새로운 업무 발굴 및 담당업무 개선 실적이 탁월한 경우	1.0점 이내	◦ 제도나 기술개선 등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함	
	1-4 우수 학습동아리(최우수, 우수, 장려)로서 그 연구결과가 구정에 반영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 구정의 당면과제 및 현안문제 해결 등	1.0점 이내	◦ 주제안자 1인, 부제안자 2인 이내로 배점은 차등부여 ◦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2. 주요시책 (idea)발굴	2-1 주요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람	1.5점 이내	◦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대상자 추천 ◦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3. 예산절감 기여	3-1 제도 및 기술의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의 경우 · 연간 1억원 이상 ·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점 이내 1.0점 이내 0.5점 이내	◦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수행자 1인에 한하여 인정 ◦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4. 프로젝트팀 (TF)실적우수	4-1 현안·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프로젝트팀의 구성원 중 업무 추진실적이 인정된 사람(팀) ※ 일상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팀 제외	0.5점 이내	◦ 실적평가부서의 평가결과 그 실적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 평가부서에서 대상자 일괄 신청	
5. 업무추진 우수	5-1 특별과제, 현안과제 등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여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업무추진 우수자로 추천,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5점 이내	◦ 업무추진에 직접 기여한 실질적 기여자 최대 2인까지 인정 ◦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5-2 전국단위 소관업무평가 결과 기관 포상을 받은 경우 · 최우수상 · 우수상	0.7점 이내 0.5점 이내	◦ 관행적 표창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업무평가 결과에 한함 ◦ 당해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실질적 기여자 2인까지 해당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비고
	5-3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수업무 수행실적의 경우	0.5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한 특수업무추진 실질적 기여자 2인까지 인정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5-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사람	0.5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의 기여도 심사 	
6. 격무업무 우수근무자	6-1 격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 난이도 A · 난이도 B	0.5점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설문을 통해 격무업무 선정 후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격무업무단위(인원) 및 가점 결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0.5점 또는 0.3점으로 결정) 대상업무 최소 근무기간 : 1년 이상 (각 정기평정일 기준)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의 인정여부 심사·결정 	
7. 고질적 장기민원 해결 기여자	7-1 고질적인 집단·장기민원 해결에 크게 기여한 사람 · 협의·설득을 통한 민원종료 · 민원해결과정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특별대책 시행 등)	1.5점 이내 1.0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이상 장기화된 민원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민원 평정기간 전부터 연속된 경우 최종심사시 인정(실질적 기여자 1인까지 인정)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한 심사 	
8. 구정평가 결과우수 / 구 자체	8-1 구정평가제 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 최우수 부서(3인 이내) · 우수 부서(2인 이내) · 장려 부서(1인)	1.0점 0.5점 0.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수상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자 	
9. 상사업비 확보	9-1 상급기관 행정역량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상사업비 확보 시 · 3억 이상 · 1억 이상 3억 미만	1.0점 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사업비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수상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자 (2인 이내) 	
10. 협업사무 추진실적 우수	10-1 지정된 협업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으로, 근무 성적평정확인자가 협업사무 추진 우수자로 추천하여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총괄추진 담당자 · 협업추진 담당자	1.0점 이내 0.5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사무 추진에 직접 기여한 실질적 기여자 중 총괄부서 추진 담당자 1인 외 협업부서별 추진 담당자 각 1인에 한함 협업사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희망지역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①	①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①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 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⑩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첨 부 :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용연월일	임용직급	임용직위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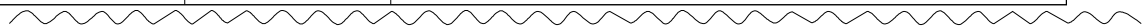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용불응사유



비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11A
1969. 12. 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0g/m²)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계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한자					직류		계급
⑦ 선택과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1차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 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인)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년 시행 제 회 시험		년 월 일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 한 규격			
임용예정직명 :		(급 류)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작 성 요 령

-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 ①~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란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 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삭제
-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시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일간)							
	실지 수습 기간	. . . ~ (일간)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명	(한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td> </tr> </table>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제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심의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신규임용시(경력경쟁임용 포함) 응시자 제출 서류, 결격사유, 면접시험 평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 다.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특별승진 임용기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등 임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3. 기타 의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직 무 대 리 명 령 서

1. 피 대 리 직 위 :
2. 대리자 직 성명 :
3. 대 리 기 간 :

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

년 월 일

직 성명 (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의 순서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지방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 상 :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 상 :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

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의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과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 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참여의식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제안의 심사기준과 인사상 특전 등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라.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
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
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
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
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이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 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소속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⑤성명	한 글	⑥ 생년월일							
		한 자	⑦ 주 소		□□□-□□□					
⑧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⑰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급 · 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
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		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지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팀장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의회 의장 귀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또는 조기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자,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

나.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 심사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규칙</u>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규칙</u>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 ----- ----- -----.</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대전
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윤리심사
2. 의원 징계심사
3. 의원 자격심사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개회일 3일전”을 “개회 3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로, “검직”을 “검직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1조) 중 “이외의 위원회”를 “규정 외에 위원회의”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3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전광역시 대덕구</u> <u>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u> <u>규칙</u></p> <p><u>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u> <u>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7</u> <u>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u> <u>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u> <u>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u> <u>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u> <u>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u> <u>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u> <u>한다.</u></p>	<p><u>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u> <u>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u> <u>규칙</u></p> <p><u>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u> <u>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u> <u>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u> <u>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u> <u>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u>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u> <u>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u> <u>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장</u> <u>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다음</u> <u>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u> <u>의결한다.</u></p> <p><u>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u> <u>(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u> <u>한 윤리심사</u></p> <p><u>2. 의원 징계심사</u></p> <p><u>3. 의원 자격심사</u></p>

제4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제4조(위원회 개최의 통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2. (현행과 같음)

제5조(심문) -----

----- 개회
3일 전 -----
-----.

제6조(발언 및 변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따른 -----

-----.

제8조(통고) -----

----- 해당 -----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 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신 설>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

---.

② ----- 제1항에 따른 -----
----- 해당 -----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
구 --- 겸직하여 -----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 제60조의3을 따른다.

제12조(위임) -----

규정 외에 위원회의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 규정을 규율 내용에 맞게 정비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태성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과전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과전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

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과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출 장 신 청 서

20

결 재				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이동사항 :							
여비				정산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써,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부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승인된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계획 변경(2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성화계획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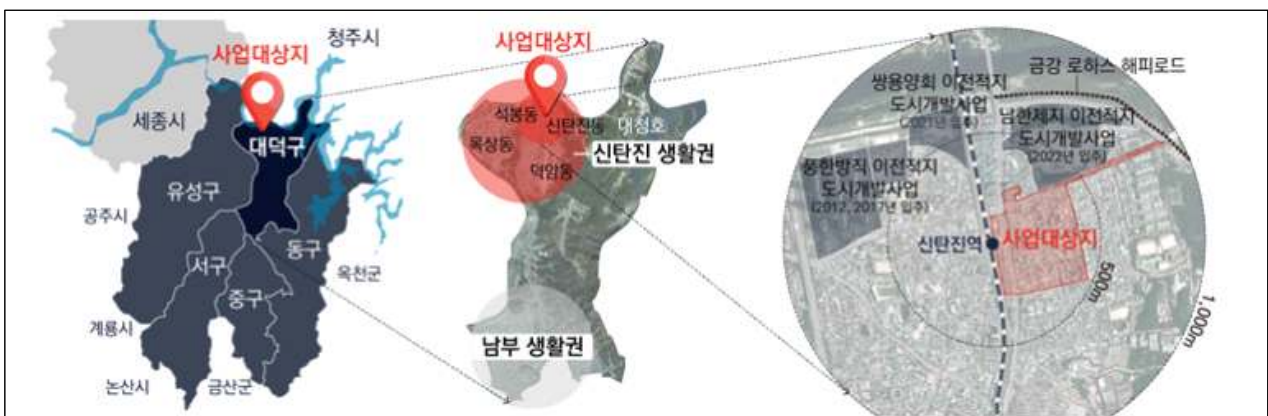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명칭: 지역활성화의 새 여울을 여는 신탄진 상권활력UP 프로젝트
- 2) 활성화 지역 및 면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41-28번지 일원(181,754㎡)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변경)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변경없음)

- 1) (비전) 쇠퇴한 역전 상권을 신탄진 생활권 주민들의 일터, 삶터, 놀이터로 재생

2) (목표)

(가) 샬터로 재생: 노후·유형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나) 일터로 재생: 상권의 체질개선을 이끌 키맨 육성하기

(다) 놀이터로 재생: 여가문화 활성화하기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변경)

1) 사업기간: 2018~2022년 (5개년) *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 ~'23년

2) 도시재생사업계획

(가) 마중물사업: 8개 단위사업

(나) 연계사업: 부처협력사업 5개, 지자체자체사업 6개, 공공기관투자사업 2개, 민간투자사업 1개 사업

대분류	중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마중물 사업	목표1. 노후·유형 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단위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 확대(지하2층) 및 이벤트공간 조성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 정비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단위2.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재생 공동체 워크숍 운영 지역대학 연계 거리재생 실습
		단위3. 도시재생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관련 강좌 운영 주민공모사업 운영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지원 활성화계획 수립
	목표2. 상권의 체질개선을 이끌 키맨 육성하기	단위4.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시설 내 창업지원공간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복합마더센터) 조성
		단위5.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점포 경영진단 및 컨설팅 점포 리모델링 지원
		단위6. 창업인 인큐베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창업인 육성 교육 및 컨설팅 창업인실습공간 조성
	목표3. 여가문화 활성화하기	단위7.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거점공간 확장 이전 커뮤니티 문화장터(벼룩시장 등) 운영지원
		단위8.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청로 도로구조개선(자전거도로 확충) 건강걷기 관광콘텐츠 개발(스토리텔링, 상품개발 등)
부처 협력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처리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대상 돌봄 시설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생 대상 돌봄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자체 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탄진로 자전거 안전위험구간 정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협약 체결 및 공간정비 지원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한지 활용협약 체결 및 공간정비 지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정비 등을 통해 집앞주차장 조성비 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선투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상반기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지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복합개발에 따른 행정청사 조성
기타 사업	타슈스테이션(공공자전거) 신규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신규 설치 지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연계 신탄진동로23번길 가공선로 지중화 추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임대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복합개발에 따른 임대주택, 상생상가 조성 추진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연계 대청로 도로구조 개선 및 녹지 확충

3) 재원조달 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총액	국비	지방비	기타	
총 합계		900.35	243.63	302.72	354.00	
마중물 사업	소 계	300.00	150.00	150.00	-	
	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125.00	57.66	67.34	-	18~22
	2.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2.20	1.05	1.15	-	19~22
	3. 도시재생대학 운영	6.55	0.88	5.67	-	18~22
	4.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54.00	33.00	21.00	-	19~23
	5.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3.00	1.50	1.50	-	19~22
	6. 창업인 인큐베이팅	16.35	9.41	6.939	-	19~22
	7.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84.00	42.00	42.00	-	18~22
	8.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8.90	4.50	4.40	-	20~22
부처 협력 사업	소 계	15.97	8.63	7.34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0.67	0.33	0.34	-	19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10.00	5.00	5.00	-	21
	다함께 돌봄사업	1.00	1.00	-	-	21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0.30	0.30	-	-	19~22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4.00	2.00	2.00	-	18
지자체 사업	소 계	63.38	-	63.38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0.40	-	0.40	-	19~22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확충	0.40	-	0.40	-	19~22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0.40	-	0.40	-	19~22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선투자분)	1.28	-	1.28	-	18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60.00	-	60.00	-	23
	타슈스테이션(공공자전거) 신규설치	0.90	-	0.90	-	21
기타 사업	소 계	521.00	85.00	82.00	354.00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34.00	-	17.00	17.00	19~20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임대주택 등)	347.00	85.00	65.00	197.00	19~23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140.00	-	-	140.00	21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예산집행 계획(단위 : 억 원)

구분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총 합계		55.22	124.09	512.88	192.13	16.03	900.35
마중물 사업	소 계	49.21	123.73	71.52	39.87	15.67	300.00
	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14.56	72.53	23.41	12.00	2.50	125.00
	2.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	0.55	0.30	0.45	0.90	2.20
	3. 도시재생대학 운영	2.40	1.55	0.82	0.88	0.90	6.55
	4.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25.07	-	20.09	8.84	-	54.00
	5.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	0.75	0.75	0.75	0.75	3.00
	6. 창업인 인큐베이팅	4.08	0.70	1.50	7.20	2.87	16.35
	7.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2.50	47.45	24.05	9.75	0.25	84.00
	8.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0.60	0.20	0.60	-	7.50	8.90
부처 협력 사업	소 계	4.73	0.06	0.06	11.06	0.06	15.97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0.67	-	-	-	-	0.67
	저출산대응 공모사업-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	-	-	10.00	-	10.00
	다함께 돌봄사업	-	-	-	1.00	-	1.00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0.06	0.06	0.06	0.06	0.06	0.30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4.00	-	-	-	-	4.00
지자체 사업	소 계	1.28	0.30	60.30	1.20	0.30	63.38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0.10	0.10	0.10	0.10	0.40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확충	-	0.10	0.10	0.10	0.10	0.40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	0.10	0.10	0.10	0.10	0.40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선투자분)	1.28	-	-	-	-	1.28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	-	60.00	-	-	60.00
	타슈스테이션(공공자전거) 신규설치	-	-	-	0.90	-	0.90
기타 사업	소 계	-	-	521.00	-	-	521.00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	-	34.00	-	-	34.00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임대주택 등)	-	-	347.00	-	-	347.00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	-	140.00	-	-	140.00

※ 향후 세부계획(설계)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파급효과

대분류	중분류	사업명	파급효과
마중물 사업	목표1. 노후·유흥 상권 변화기반 만들기	단위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가로주차문제 및 보행여건 개선 • 상권 내 주민·방문객 공동이용시설 제공으로 편의 증진 및 상권 이용객 증가
		단위2. 공동체 참여형 새여울 거리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협정 등을 통한 경관관리 지속성 확보 • 지역-지역대학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단위3. 도시재생대학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분야별 활동가 육성 •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활동 유지 역량 강화
	목표2. 상권의 체질개선을 이끌 키맨 육성하기	단위4.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주거기능 복합화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랜드마크 이미지 개선 • 육아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젊은 층의 정착 기회 강화
		단위5. 골목점포 살리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점포의 변화로 상권 분위기 개선
		단위6. 창업인 인큐베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내 창업실습공간 조성, 신규창업인 육성으로 노후 상권분위기 개선
	목표3. 여가문화 활성화하기	단위7.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상업 전이공간에 거점 커뮤니티시설 운영하여 공간분위기 양성화 유도 • 신탄진만의 공동체문화모델 제시, 新여가문화 창출
		단위8. 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로하스 해피로드 및 대청호 관광객 유입 기회 증진 • 신탄진지역의 특성화, 집객 유도
부처 협력 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수준 개선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관련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다함께 돌봄사업		
	생활문화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생활문화 창조
지자체 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진역~금강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상권 유입인구 증가 유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주차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주차수요 수용 가능 • 공유주차, 내집 주차 등을 통해 노상주차, 불법주차 문화의 점진적 개선 도모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확충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원(선투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노후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타슈스테이션(공공자전거) 신규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내 자전거이용객 유입 유도, 레저생태문화 강화 	
기타 사업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보행축인 신탄진동로23번길 일대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임대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내 임대주택, 상생상가 조성
	남한제지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진상권과 접한 대청로 일원 가로정비 및 경관정비

6)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연번	사업명	내용	비고
1	역세권 상업가로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확대 및 이벤트공간 조성	주차장, 광장, 공동이용시설 조성
2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조성	행정복지센터, 창업지원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
3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조성	커뮤니티센터(생활문화+공동체 교류)조성	공동이용시설 조성

7) 행위 제한 적용지역: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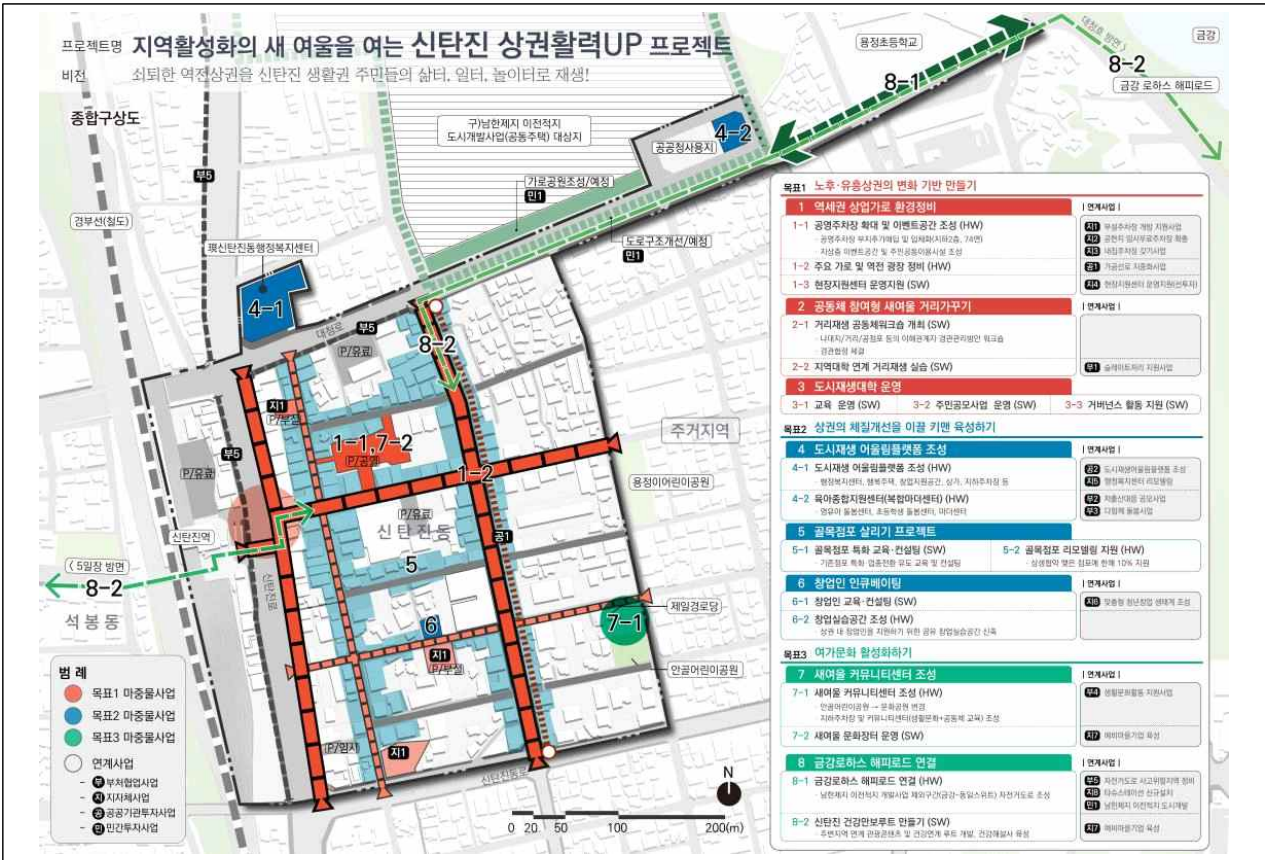
다.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변경없음)

구분	주체	내용
자체 성과관리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대덕구 전담부서	· 사업목표에 따라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국토교통부 성과평가	국토교통부 /대전시(광역지자체)	· (국토교통부) 매년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자체에 배포 → (광역지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사업지에 대한 평가 실시하여 제출

라.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변경)

구분	내용	구성 여부	
중앙 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
	도시재생 지원기구(LH)	·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
	컨설팅단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수행	-
행정	전담조직	· 활성화계획 수립 · 단위사업 시행 총괄	도시재생사업단 구성 이전 (현재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업무 총괄 지원)
	도시재생 사업단	· 행정업무 세분화·구체화하여 사업 시행	구성 ('19년 10월~)
	행정협의회	· 뉴딜사업 협력 및 자문 · 각종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구성 ('17년 10월~)
	대전시	·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총괄 지원 · 시↔구 간 행정적 협의 진행	-
도시 재생 지원 센터	대전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 홍보 지원 · 주민교육 지원 · 사업추진 지원 등	구성 ('15년 6월~)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사업추진 총괄 · 이해관계자 간 의견 및 갈등 조정 ·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구성 ('18년 4월~)
주민	주민협의체	· 일반 주민-행정 간 가교 역할 · 주민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	구성 ('18년 3월~)
관련기관	· 관련 단위사업별 협조 (협력사업 추진 또는 사업 위탁 등)	MOU체결 및 위탁사업 진행 등	
사업추진협의회	· 활성화계획의 수립 · 주체별 의견 수렴 및 조율 등	예비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가칭 운영위원회 ('18년 2월~)	

마. 사업계획도(변경)



3. 관련 서류 열람

가. 열람 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 장소: 대덕구청 도시재생사업단(☎042-608-5397) 신탄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70-4161-6741) 끝.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건 명: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가. 결정항목

1) 오피스텔

(가) 표준가격기준액 : 오피스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고시하는 m²당 기준가액

(나) 시가표준액: 적용지수(용도·구조지수)와 가감산율

2) 오피스텔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가) 기준가격: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다) 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의 적용)

(라) 경과연수별 잔가율

(마)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바) 중·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사)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아)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나. 세부결정사항: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2. 건 명: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가. 결정항목

1) 차 량: 87,088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기준가격표

2) 기계장비: 12,882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⑦기준가격표

3) 선 박: 140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감가율 ③적용요령 ④기준가격 ⑤잔가율표
⑥산출예시

4) 향 공 기: 244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적용요령 ④기준가격 ⑤산출예시

5) 시 설 물(부수시설물 포함): 4,202종

①정의 ②종류(구분)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6) 입 목: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 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시가표준액 적용요령

7) 어 업 권

①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8) 회 원 권

①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적용요령

9) 지하자원

①용어정의 ②지하자원(광물)의 종류 ③관련 용어해설 ④적용요령

나. 세부결정사항: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202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는 세무과에 비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대화동 225-8	대화로 87	2021. 12. 24.	건물신축	행정구역명(대화동)을 반영
장동 162-2	장동로228번길 76-58	2021. 12. 24.	건물신축	장동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2,2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165-25	방두말5길 9	2021. 12. 24.	건물신축	지형이 방둥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명에서 유래
상서동 265, -16	신탄진로 558	2021. 12. 24.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
평촌동 226-9, -10	신탄진로 662	2021. 12. 24.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미 시정으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공문 및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고기간: 2021. 12. 24. ~ 2022. 1. 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대상: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가.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해 자진정비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43)로 연락 바랍니다.

나. 아울러,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발생년도	부과금액 (원)	비고
1	유*준	읍내동 343-12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32.5	음식점	1999	307,000	폐문부재
2	육*순	송촌동 465-9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7.2	창고	2006	212,000	폐문부재
3	이*선	중리동 391-5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18.24	음식점	2010	146,000	폐문부재
4	이*미	비래동 141-1	무단증축	경량철골구조	8.25	창고	1996	109,000	폐문부재
5	김*란	비래동 137-35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경량철골구조	15.39	주택	1997	197,000	폐문부재
6	오*숙	덕암동 3-16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6.75	창고	2014	389,000	폐문부재
7	김*엽	비래동 140-1	무단증축	컨테이너구조	6.25	창고	2005	35,000	폐문부재
8	박*순	읍내동 543-41, 358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127.3	주택	1993	1,839,000	폐문부재
9	박*순	목상동 185-1	무단증축	경량철골구조	1.86	소매점	2004	73,000	폐문부재
10	김*숙	중리동 165-21	무단증축	조립식패널조	34.46	주택 음식점	1998	534,000	폐문부재
11	이*연	비래동 555-7	무단증축	시멘트블럭조	1.5	음식점	1999	26,000	폐문부재
12	김*제	덕암동 8-18	무단증축	조립식판넬조	22.6	창고	2005	544,000	폐문부재
13	황*숙	중리동 239-33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3.6	주택	2009	22,000	폐문부재
14	한*수	대화동 35-411	무단증축	시멘트블럭조	48.6	주택	2009	2,833,000	폐문부재
15	송*자	연축동 200-4	무단증축	조립식판넬조	9	창고	2006	265,000	폐문부재

대덕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 대덕구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2) 및 사업시행부서(건설과, 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행기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6년차 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합계	51	95,297	78,052	21	57,117	35,175	9	12,386	15,859	21	25,794	27,018	
소계	10	9,225	8,359	1	3,448	6,145	2	1,216	663	7	4,561	1,551	
재정적·집행시설	도로	5	4,205	1,778			1	816	472	4	3,389	1,306	
	주차장	5	5,020	6,581	1	3,448	6,145	1	400	191	3	1,172	245
비재정적 집행시설	41	86,072	69,693	20	53,669	29,030	7	11,170	15,196	14	21,233	25,467	

※ 공고 이후 재정여건 및 주변개발여건 등에 따라 집행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반시설별 조성비로 산정된 개략사업비로 실제 감정평가 및 조성현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음.

나.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 조서: 게재 생략. 끝.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주차장법」 제1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송촌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를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참고사항

- 입찰대상 주차장의 주변상황 파악 및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수익률을 확인 후 적정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로 인하여 유료운영이 일정 기간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료를 일할 정산하여 감면 고지할 예정입니다.
- 대전광역시 노외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시 위탁자는 시스템 및 부대시설물 등을 도입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인터넷 통신요금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차장 현황 및 조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	주차 면수	운영시간	최저입찰가격
송촌 진가쟁이 공영주차장	송촌동 505-2	4	1,530	54면	08:00 ~ 22:00	16,27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총수탁기간(2년중) 무료개방일(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수탁료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간 : 2년 (2022. 2. 1. ~ 2024. 1. 31.)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21. 12. 24. 10:00 ~ 2021. 12. 31. 16:00	2022. 1. 3. 10:00	http://www.onbid.co.kr	대덕구청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주민등록등본(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가입증명서) 1부.
- 제출기한 : **2022. 1. 14.(금) 16:00까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0. 관리계약 체결

- 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 낙찰자의 제출서류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함
-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귀속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수탁료 납부 : 계약 체결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료(=낙찰금액)는 선납 또는 분기별 분할 납부(매분기 개시전월 납부통보에 의거 납부 / 분할납부시 연1.28%의 이자납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 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 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 참가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입찰금 과다 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93)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끝.